

◎ 통계청 고시 제 2024 - 698호

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(협의)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10월 31일

통계청장

- 통계의 명칭 : 청소년도박실태조사
(Youth Survey on Gambling)
-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
-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: 제469001호 [2024.10.24.]
- 통계작성의 목적 : 청소년 도박 실태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·분석하여 도박문제 해소 정책에 필요한 신뢰성 높은 기초자료 생산
- 통계작성의 대상 :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(4학년~6학년), 중학생(1학년~3학년), 고등학생(1학년~3학년)
- 통계작성의 주기 : 1년
- 통계작성의 방법 : 조사통계/일반통계